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5. 30 선고 2022나14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5. 30 선고 2022나14496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가합10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가합100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4. 21. 접수 제1175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글상자 아래 제9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업무이행약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조정을 통해 위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① 원고는 주식회사 Q(변경 후 상호: R 주식회사, 이하 'Q'라고 한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C과 업무이행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고, 위 채권의 채권자는 Q 또는 그 주주들인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업무이행약정에 따라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였고, 이에 Q의 주주들은 위임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더는 C로부터 업무이행약정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을 제44, 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60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24. 2. 2. '원고는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에 따라 C 등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원고 또는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Q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Q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2024노11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따른 26억 500만 원(=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상 채권 33억 원 - 기지급 대금 6억 9,500만 원) 상당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그리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참조).

원고와 C 사이에 2020. 6. 1. 'C이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채무원금을 24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지급 금액 6억 9,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조서가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채권 즉,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따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4, 35, 38 내지 41, 43,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의 채권자임이 인정되고, Q 또는 그 주주의 금전 수령 권한 있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거나 주주의 위임 철회에 의해 더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으로 Q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C을 위한 용역 수행 대가로 6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소비한 것은 자기 소유 금원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8. 12. 11.자 업무이행 약정은 원고 개인에 대한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Q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만 한다)를 C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C로부터 수령한 6억 2,000만 원은, 주주 S, T(U)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로서 Q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 시 작성된 업무이행약정서에 당사자가 Q나 그 주주가 아니라 원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도 채권자를 Q나 그 주주가 아니라 원고로 하여 작성되었는바,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상 계약당사자가 원고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C도,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 당시 원고가 업무이행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Q의 전 대표이사’일 뿐 Q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약정금을 Q 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 또는 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2019. 5. 22. 위 약정을 변경할 때에는 원고가 Q의 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Q와 원고를 모두 당사자로 기재한 업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조정까지 하였는바, 원고를 약정 상대방으로 이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서에 Q의 주주인 S, T과 T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U 명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위 위임장에는 피위임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권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즉, 자신이 당사자로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 C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Q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제안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당사자 간 양도양수계약으로써 이전되는 것도 아니며, C로서는 Q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진행한 용역 결과물을 승계받는 절차가 진행되면 족하였는바, 반드시 Q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였던 것은 아닌 점, ㉢ Q가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그 주주 일부의 위임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서에 위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당사자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와 C이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Q를 당사자로 추가한 것을 보더라도, Q는 이전에 체결된 2018. 4. 22.자 업무이행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의 주장이나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과 같이 2018. 4. 22.자 업무이행약정 당사자를 Q로 보더라도,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는 Q뿐만 아니라 원고도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원고가 그 당사자임은 분명하다.

③ 피고는, Q의 주주인 T(U)이 2020. 1. 2.경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따른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2018. 4. 22.자 업무이행약정 또는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에 따른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1.자 업무이행약정에 Q 주주들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이행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의 당사자임은 분명한 점, Q가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주 일부의 위임만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주주가 그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임장을 작성한 주주 전부가 위임을 철회한 것도 아닌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T(U)의 위임 철회와 관계없이 여전히 C에 대하여 2018. 4. 22.자 업무이행약정 또는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의 당사자로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2018. 4. 22.자 업무이행약정과 2019. 5. 22.자 업무이행각서가 사실상 Q와 C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를 약정한 것으로서 결국 그에 따른 이익이 Q 또는 그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Q 또는 그 주주와 원고 사이의 약정 이행이나 정산의 문제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약정의 당사자가 Q 또는 그 주주들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20행의 “피고의”를 “C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광국, 판사 이수연, 판사 조미화

별지